

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2
----------	-----

제안년월일 : 2000년 2월 8일

발 의 자 : ~~의정~~위원외 10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99. 8. 31) 및 동법시행령('99. 12. 31)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정활동비

- 월 350,000원 지급하던 것을 월 550,000원으로 지급(안 제2조제2항)

나. 회기수당

-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 회의수당 1일당 50,000원 지급하던 것을 1일당 70,000원으로 지급
(안 제3조제2항)

다. 출장여비

- 의회사무실 내에서의 출장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정정
(안 제7조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2항중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한다.

제3조중 “(회의수당 지급)”을 “(회기수당 지급)”으로 하고, 제1항의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2항중 “회의수당”은 “회기수당”으로하고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의회 사무실 내에서의 출장”을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및 제3조(회의수당지급)의 규정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칭	성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조례명칭	회기수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 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회기수당.....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350,000원으로 하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550,000원
제3조(회의수당지급) 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 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지급)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70,000원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여비)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내에서의 출장”이라함은 성남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